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양곡 가격 보장 관련 제도 도입 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24호)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31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67호)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96호)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5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1
1. 개정안의 취지	11
2. 관련 법안 심사 경과 및 내용	11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13

I . 제안경위

1. 신정훈의원안(2201524)

가.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9.

다. 회 부 일 : 2024. 7. 10.

2. 서삼석의원안(2201531)

가.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4. 7. 9.

다. 회 부 일 : 2024. 7. 10.

3. 박수현의원안(2201867)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26인

나. 제 안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4. 임미애의원안(2201996)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5. 정희용의원안(2202158)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23.

다.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신정훈의원안(2201524)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양곡의 가

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양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한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차. 선제적 수급조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제16조의6 신설).
-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2. 서삼석의원안(22015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약 368.4만 톤)이 전년대비 2.17%가량 감소하였으며, 2024년 쌀 추정수요량은 전년 대비

1만 3,000톤 늘어난 36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국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난 2020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임금·유류 등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수확기인 10월 말 평년 가격은 19만 6,656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돌파하기는커녕 2024년 5월 기준 18만원 이하로 무너짐.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 요구로 마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과잉 공급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식량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대처를 확인함.

이에 종전의 미국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3. 박수현의원안(2201867)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제16조의3 신설).

라.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4. 임미애의원안(2201996)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국·밀·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타.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5. 정희용의원안(2202158)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 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16조의3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생육 중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논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바.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쌀 생산의 과잉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의무적 시장격리, 양곡의 시장가격과 기준 가격 간의 차액 보전,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2. 관련 법안 심사 경과 및 내용

같은 취지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024. 6. 20.)되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 7. 16.)에 회부되었음.

연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회부일)	위원회 상정일	법안소위 회부일
1	제2200017호	윤준병의원 등 10인	24-05-30(24-06-11)	24-06-20	24-07-16
2	제2200089호	이원택의원 등 11인	24-06-03(24-06-11)		
3	제2200299호	황명선의의원 등 15인	24-06-11(24-06-12)		
4	제2200572호	어기구의의원 등 10인	24-06-18(24-06-19)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4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윤준병 의원 (‘24.5.30)	이원택 의원 (‘24.6.3)	황명선 의원 (‘24.6.11)	여기구 의원 (‘24.6.19)
목적 규정 추가		▶ 생산자 이익 보호, 적정한 가격 유지 등	▶ 적정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	▶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 등	
공공비축양곡 범위		▶ 미곡, 밀, 콩	▶ 미곡, 밀, 콩 ▶ 대통령령에 따른 양곡	▶ 미곡, 밀, 콩 ▶ 대통령령에 따른 양곡	▶ 미곡, 밀, 콩 ▶ 대통령령에 따른 양곡
관리양곡 범위		▶ 전체 양곡	▶ 정부관리양곡	▶ 전체 양곡	▶ 정부관리양곡
정부관리양곡 종합정보시스템		▶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관리시스템 구축	-	-	-
정부관리양곡 보관실태점검		▶ 보관 실태 의무 점검 ▶ 보관시설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	-	-
의무수입양곡		▶ 실태조사 실시 의무	-	-	-
시장격리 관련		▶ 의무매입	▶ 의무매입	▶ 재량시행	▶ 의무매입
가 격 보 장	제도명	-	▶ 적정가격보장제	▶ 별도명칭 없음	▶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	▶ 재량시행	▶ 재량시행	▶ 재량시행
	기준금액	-	▶ 적정가격	▶ 기준 가격	▶ 기준가격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설치	▶ 의무설치	▶ 의무설치	▶ 의무설치	▶ 의무설치
	위원회 심의항목	①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②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③양곡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④미곡 재배면적 조정	①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②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③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④양곡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⑤미곡 재배면적 조정	①양곡 가격 보장 관련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②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③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④양곡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⑤미곡 재배면적 조정	①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②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③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④양곡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⑤미곡 재배면적 조정
	인원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내외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논의 방식	▶ 심의	▶ 심의·의결	▶ 심의	▶ 심의·의결
타작물 재배지원		▶ 논타작물 재배 지원 ▶ 시행계획 수립·시행 ▶ 재정적 지원(재량)	▶ 타작물 재배 지원 ▶ 시행계획 수립·시행 ▶ 재정적 지원(의무)	-	▶ 타작물 재배 지원 ▶ 시행계획 수립·시행 ▶ 재정적 지원(재량) ▶ 휴경·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 가능
미곡수급관리 시스템		▶ 미곡 수급 관련 통계, 관측자료 체계적 수집, 분석, 관리 시스템 ▶ 재량규정	-	-	-
선제적 수급관리		▶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지원	-	▶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지원	-
생산자단체 설립		-	▶ 설립 근거 마련 ▶ 농식품부 인가 사항	-	-
양곡유통업 육성		▶ 미곡 외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안과 유사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신정훈 의원 (‘24.7.9)	서삼석 의원 (‘24.7.9)	박수현 의원 (‘24.7.17)	임미애 의원 (‘24.7.19)	정희용 의원 (‘24.7.23)
목적 규정 추가		▶ 생산자 이익 보호, 적정한 가격 유지 등	-	▶ 생산자 이익 보호	▶ 생산자 이익 보호, 적정한 가격 유지 등	-
공공비축양곡 범위		▶ 미국, 밀, 콩	-	-	▶ 미국, 밀, 콩	-
관리양곡 범위		▶ 전체 양곡	▶ 정부관리양곡	▶ 정부관리양곡	▶ 전체 양곡	▶ 정부관리양곡
정부관리양곡 종합정보시스템		▶ 매입, 보관, 입고·출고, 가공, 운송, 매출현황 등 관리 시스템 구축	-	-	▶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관리시스템 구축	▶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관리시스템 구축
정부관리양곡 보관실태점검		▶ 보관 실태 의무 점검 ▶ 보관시설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	-	▶ 보관 실태 의무 점검 ▶ 보관시설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
의무수입양곡		▶ 실태조사 실시 의무 ▶ 방출 제한 규정 마련	-	-	▶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시장격리 시행		▶ 의무매입	▶ 의무매입	▶ 재량시행	▶ 의무매입	▶ 재량시행
격 보 장	제도명	-	-	▶ 양곡가격안정제도	▶ 양곡가격안정제도	-
	시행	-	-	▶ 재량시행	▶ 의무시행	-
	기준금액	-	-	▶ 기준가격	▶ 기준가격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 의무설치	-	▶ 의무설치	▶ 의무설치	-
	위원회 심의항목	①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②미국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③양곡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④미국 재배면적 조정	-	①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②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③미국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④양곡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⑤미국 재배면적 조정	①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②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③미국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④양곡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매입·판매가격 ⑤미국 재배면적 조정	-
	인원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논의 방식	▶ 심의·의결	-	▶ 심의·의결	▶ 심의	-

구 분	신정훈 의원 (‘24.7.9)	서삼석 의원 (‘24.7.9)	박수현 의원 (‘24.7.17)	임미애 의원 (‘24.7.19)	정희용 의원 (‘24.7.23)
타작물 재배지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정적 지원(재량)	-	-	▶논타작물 재배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정적 지원(재량)	▶논타작물 재배 지원 ▶재정적 지원(재량)
미국수급관리 시스템	▶미국 수급 관련 통 계, 관측자료 체계 적 수집, 분석, 관 리 시스템 ▶재량규정	-	-	▶미국 수급 관련 통 계, 관측자료 체계 적 수집, 분석, 관 리 시스템 ▶재량규정	▶미국 수급 관련 통 계, 관측자료 체계 적 수집, 분석, 관 리 시스템 ▶재량규정
선제적 수급관리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지원	-	-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지원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지원
단체 설립	▶설립 근거 마련 ▶농식품부 인가 사 항	-	-	-	-
양곡유통업 육성	▶미국 외 양곡유통 업 육성 근거 마련	-	-	▶미국 외 양곡유통 업 육성 근거 마련	▶미국 외 양곡유통 업 육성 근거 마련

다만, 신정훈의원안은 ① 공공비축양곡 비축 물량의 확대, ② 양곡
관리특별회계에서 공공비축양곡 비축·운용 비용 지출 등을 추가적으
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현 행	신정훈의원안	개정 내용
안 제10조 제1항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 ----- 하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비축양곡 비축 시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
안 제10조 제4항	<신 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밀·콩 관련 비축사업 예산은 현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바, 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관

5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